

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3. 12. 18.

발 의 자 : 제준호의원의외 8인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2003. 7. 18)과 같은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8161호 ; 2003. 12.18)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이 인상조정 됨에 따라 이들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조정 (안 제2조제1항)

- 의정자료수집 · 연구비 : 1인 월 550,000원 → 900,000원
- 보조활동비(신설) : 1인 월 200,000원

나. 여비지급 기준조정

-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 (안 별표 1)
 - . 의장 · 부의장 : 1야당 41,000원 → 46,000원
 - . 의원 : 1야당 22,000원 → 25,000원
-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일비 및 숙박비 (안 별표 2)
 - . 일 비 : 의장 · 부의장 25불 → 35불, 의원 20불 → 30불
 - . 숙박비 : 의장 · 부의장 137불~65불 → 166불~79불,
의원 120불~48불 → 145불~62불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
-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
-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

4. 본 문 : 붙임

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1인 매월 550,000원의 의정활동비를”을 “의정활동비로 1인 월 900,000원의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와 200,000원의 보조활동비를”로 한다.

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숙박비(1야당)
46,000
25,000

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일비란 및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비(1일당)	숙박비(1야당)
35	가등급 166
	나등급 120
	다등급 92
	라등급 79
30	가등급 145
	나등급 95
	다등급 70
	라등급 62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 ①의원에게는 1인 매월 550,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 ②(생략)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(단위 : 원)			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 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로 1인 월 900,000원의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와 200,000원의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. ②(현행과 같음)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(단위 : 원)		
구 분	숙 박 비(1야당)		구 분	숙 박 비(1야당)	
의 장 부 의 장	41,000		의 장 부 의 장	46,000	
의 원	22,000		의 원	25,000	
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(단위 : 미불화)			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(단위 : 미불화)		
구 분	일비(1일당)	숙박비(1야당)	구 분	일비(1일당)	숙박비(1야당)
의 장 부 의 장	25	가등급 137 나등급 94 다등급 75 라등급 65	의 장 부 의 장	35	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
의 원	20	가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8	의 원	30	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